

설비건설업계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칙규정 ⑧

설비건설업을 하다 보면 챙겨야 할 서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어떤 것은 시기를 맞추지 못해 벌금을 물 때도 있고, 어떤 것은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증이 많아진다. 이 때 도움을 받기 위해 관련기관 및 협회 등에 일일이 문의하기도 하지만 번거롭기 그지 없다.

설비건설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알아두면 업무처리에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벌칙을 미리 피하게 돼 경영상 이익을 가져다 준다.

본지는 설비건설업체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칙규정을 지난 9월호부터 연재한다.

글 쓰는 순서

II. 건설관련 법령 벌칙규정

1. 벌칙의 종류

2.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벌칙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식의 벌칙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불이익 처분 지난 호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불이익 처분 이번 호

6. 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벌칙

7. 각종 노무관련 법령상 벌칙 다음 호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불이익 처분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 관련조문 : 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

1.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 가. 매우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이하 “부실벌점”이라 한다)이 100점을 초과한 때를 말한다]를 한 자
- 나. 계약의 이행을 매우 현저하게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누계금액비율(이하 “하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0 이상인 때를 말하고, 물품의 경우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 발생 누계금액비율(이하 “보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를 말한다] 또는 매우 현저하게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을 하거나 매우 현저하게 설계서상의 기준 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 다.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사업장 외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이 손괴되게 한 자

- 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정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게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 마.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 바. 입찰에 관한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낙찰된 자
- 사.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2. 6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 가.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부실벌점이 50점 이상 100점 이하인 때를 말한다)를 한 자
- 나. 계약의 이행을 현저하게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때를 말하고, 물품의 경우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때를 말한다) 또는 현저하게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현저하게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의사의 최초 소견서상 전치 3월 이상인 부상자 2인은 사망자 1인으로 본다)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 라.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

- 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마.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 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아.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 자. 법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3. 1월 이상 6월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 가.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부실별점이 20점 이상 50점 이하인 때를 말한다)를 한 자
- 나. 계약의 이행을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때를 말하고, 물품의 경우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때를 말한다)하게 한 자 또는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 다. 다른 사람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라.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 마.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한 자
- 바.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

- 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 사. 영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동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 아.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 자. 정당한 이유없이 영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차. 영 제99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사유별 제한기준에 의하되 동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때에는 1월 이상 6월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유 의 사 항 ☞

- 지방계약법령에 의해 한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재를 받을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드시 입찰참가를 제한한다.(시행령 제92조제7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

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를 제한 (임의적용)할 수 있으나 부실시공, 하도급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요청, 원가계산금액 부적정, 안전시공 소홀로 공중에 위해를 가한 경우, 담합, 입찰서류 위·변조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한다.(시행령 제92조제8항)

- 공동계약의 경우는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처분한다.(시행령 제92조제3항)
- 부정당업자 처분제도는 법인(개인) 및 그 대표자에 적용하나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업무를 관장하지 않은 대표자는 해당이 없다.(시행령 제92조제4항)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대하여도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시행령 제92조제5항)
-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시행령 제92조제10항)
- 부정당업자 제재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76조제2항, 제4항, 제5항)

2)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입찰무효사유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

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7. 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8.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9.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 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회계예규) 제14조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내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입찰,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12.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3.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4.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써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3) 전문건설공사 적격심사기준 신인도 감점

<조달청>

- 전문(설비 포함),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사항이 없음

<지방자치단체>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경쟁입찰의 경우
전문(설비 포함),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사항 <별표4>
 -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2호)
 -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3호)
 -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6호)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경쟁입찰의 경우
 - 배점 : -1점
 - 최근 2년 이내 다음 각호의 위반으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

- ②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③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④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6. 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벌칙

1) 건설기술인력의 관리 및 신고사항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①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미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기본교육, 전문교육(2회)의]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법제6조제2항 법제43조제2항	• 50만원이하의과태료
②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고용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때	법제6조제3항 법제43조제2항	• 50만원이하의과태료
③ 건설기술자가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	법제6조의2제5항 법제43조제2항	• 300만원이하의과태료

2) 건설기술용역 및 공사관리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① 감리 및 설계 등 용역업무의 성실의무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감리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를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교량·터널 등 주요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설계 등 용역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교량·터널 등 주요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 업무상 과실로 위의 죄를 범한 경우 	법제41조제1항 법제20조의2 법제41조제1항 법제41조제2항 법제41조의2제1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상 과실로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제41조의2제2항	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 10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②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또는 현장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제21조의4제1항 법제21조의5제1항 법제42조의2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3) 건설공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①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변경사항을 허위로 변경등록한 경우 ■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변경사항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제25조제2항 법제43조제2항 법제25조제2항 법제43조제2항 법제25조제2항 법제43조제2항	• 등록취소 • 300만원이하 과태료 • 200만원이하 과태료 • 50만원 이하 과태료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품질시험·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법제25조제1항 법제42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	법제24조제2항 법제42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	법제26조의2제2항 법제42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목적에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법제26조의2제4항 법제43조제1항	• 500만원이하 과태료
⑥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목적에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법제26조의5제3항 법제43조제1항	• 500만원이하 과태료

4) 건설공사 감리 및 기타사항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한 경우	법제28조제1항 법제43조제2항	• 등록취소 • 300만원이하 과태료
② 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의무 위반 ■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법제28조제2항 법제43조제2항 법제25조제2항 법제43조제2항	• 200만원이하 과태료 • 50만원 이하 과태료
③ 감리원의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법제28조의4제2항 법제42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책임감리 등을 업으로 한 자	법제28조제1항 법제42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업무정지명령 위반 ■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이 책임감리를 한 경우	법제30조제1항, 제2항 법제33조제1항 법제43조제2항	• 300만원이하 과태료
⑥ 감리전문회사가 영업정지기간 중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용역을 수주한 경우	법제30조제3항 법제43조제2항	• 100만원이하 과태료
⑦ 감리전문회사의 보고의무 위반 ■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련자료를 제출치 않은 경우	법제33조제2항 법제43조제2항	• 200만원이하 과태료
⑧ 감리전문회사의 사무실·공사현장 등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거부·기피한 경우	법제32조제2항 법제42조의2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⑨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법제38조 법제42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⑩ 경력·학력·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된 자	법제42조의2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⑪ 건설기술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법제42조의2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p>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자</p> <p>⑫ 양벌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41조(벌칙)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41조의2·제42조·제42조의2 및 제42조의3(벌칙)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5)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관련)

위반내용	관련규정	업무정지기간
①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법제6조의4제1항제1호	12월
②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대여한 때	법제6조의4제1항제2호	12월
<p>③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현저하게 손괴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또는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어 사망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 주요구조부가 붕괴되거나 구조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때 ■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 주요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 시공관리의 소홀로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법제6조의4제1항제3호	<p>8월</p> <p>6월</p> <p>4월</p> <p>4월</p>
④ 시방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함	법제6조의4제1항제4호	1월

위반내용	관련규정	업무정지기간
<p>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p> <p>⑤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⑥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시험을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기준에 의한 시험빈도의 2분의1이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과를 조작한 때 ■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과를 조작한 때 ■ 시험횟수, 시험실면적 및 시험·검사요원이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여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p>⑦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p> <p>⑧ 법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등을 3회 이상 받은 때</p> <p>⑨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을 받고 시공을 계속한 때</p> <p>⑩ 공사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p> <p>⑪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시공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을 한 때</p> <p>⑫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무단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한 때</p> <p>⑬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p> <p>⑭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p>	<p>법제6조의4제1항제5호</p> <p>법제6조의4제1항제6호</p> <p>법제6조의4제1항제6호의2</p> <p>법제6조의4제1항제7호</p> <p>법제6조의4제1항제8호</p> <p>법제6조의4제1항제9호</p> <p>법제6조의4제1항제10호</p> <p>법제6조의4제1항제11호</p> <p>법제6조의4제1항제12호</p> <p>법제6조의4제1항제13호</p>	<p>2월</p> <p>3월</p> <p>3월</p> <p>1월</p> <p>3월</p> <p>2월</p> <p>2월</p> <p>2월</p> <p>1월</p> <p>2월</p> <p>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정지기간 준용</p> <p>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정지기간 준용</p>